

제338회 임시회
2015.03.13.(금)

심 사 보 고 서

2.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안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03.13.(금)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이 숙 애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15년 02월 23일

다. 회부일자: 2015년 02월 24일

라. 상정일자: 2015년 03월 05일

(제3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이숙애 의원)

가. 제안이유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 정보화교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정책 마련과 정보화교육 강화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정보통신 활용 능력 습득과 바른 가치관 및 윤리의식을 증진시킴으로써, 정보화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화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정보화교육”에 대한 정의를 정보화능력 함양 교육, 인터넷·스마트폰중독 예방교육, 정보통신윤리에 관한 교육활동으로 명시함.(안 제2조)
- 2) 정보화교육 기본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3) 정보화교육 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4) 정보화교육 진흥 위원회 설치와 기능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6~9조)
- 5) 정보화교육 거점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반기환)

-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근거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의 정보화교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과 교육 강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정보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보급 확대에 따라 아동·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과 게임중독·스마트폰 중독 확대, 유해 사이트의 무분별한 노출, 정보통신을 이용한 청소년 비행과 범죄 증가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본 조례안 제정은 시기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의 정보화교육 기본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은 정보화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체계적인 정보화 교육 시행을 촉진할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5조의 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규정은 정보화교육의 운영과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 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안 제6조에서부터 안 제9조까지는 도교육청의 정보화교육 정책 수립과 시행, 평가에 대해 심의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정보화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실제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판단됨.
다만, 위원회의 심의기능과 역할이 실질적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조화롭고 균형 잡힌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에 대한 세부 사항이 시행규칙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안 제10조의 ‘충북인터넷중독대응센터’와 ‘충청북도청소년 종합진흥원’ 활용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협조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거점학교를 지정 운영하도록 한 안 제11조는 충북의 정보화교육의 특수성을 살린 지역 맞춤형 정보화교육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첨부서류: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내 학생들의 올바른 정보화능력 함양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보화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급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인터넷중독”이란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3.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이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0조의8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4.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5. “정보통신윤리”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 과정에서 개인 또는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가치판단 기준을 말한다.
6. “정보화교육”이란 정보화능력 함양 교육, 인터넷·스마트폰중독 예방교육, 정보통신윤리에 관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이하“교육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해마다 정보화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화교육에 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추진사업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정보화교육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6.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전담부서 설치) 교육감은 정보화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에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정보화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장, 과학직업교육과장, 충청북도교육정보원 정보기획부장
2. 정보화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자 및 전문가, 교사, 공공기관, 단체 및 센터 등의 업무 관계관
3. 그 밖에 정보화 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정보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제4조의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4조의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센터 활용) 교육감은 정보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 충청북도에서 운영 중인 ‘충북인터넷중독대응센터’와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제11조(거점학교의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정보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중점학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정보화교육 중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교육 중점학교는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초·중등 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3.21]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3. 24>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3.21.>
5. 삭제 <2012.3.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0조의6(인터넷중독대응센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인터넷중독대응센터(이하 “대응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대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터넷중독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
 2.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교육·홍보
 3. 그 밖에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그 밖에 대응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2.]

제30조의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③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2.]

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7(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의 실시) ① 법 제30조의8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8제2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은 강의, 시청각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터넷중독 현황 및 사례
2. 인터넷중독 예방 및 시간관리 방법
3. 유해 인터넷 환경에 대한 변별 방법
4. 그 밖에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사항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교재 및 자료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20.]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15.7.1.] [법률 제12698호, 2014.5.28., 전부개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법률 제12698호, 2014.5.28.>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 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비용 추계서

1. 비용추계내용

○ 재정수반요인

-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안 제9조, 제11조에 따른 예산 추계

2. 비용추계

-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안이 시행되면 17,36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매년 확대 예정)

구분 \ 연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정보화교육 진흥위원회 운영비	2,360천원	2,760천원	2,760천원	3,160천원	3,160천원
정보화교육 거점학교	15,000천원 (10교)	45,000천원 (15교)	45,000천원 (15교)	60,000천원 (20교)	60,000천원 (20교)
합 계	17,360천원	47,760천원	47,760천원	63,160천원	63,160천원

3.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기초자료 및 세부내역

- 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 운영비: 2,360천원
 - 위원회 참석수당 : 1,120천원
 - 정보화교육 컨설팅 및 업무추진비: 1,240천원
- 정보화교육 거점학교(지정학교 수 및 지원금액 확대 운영 예정)
 - 1,500천원 × 10교 = 15,000천원

4. 작성자 : 과학직업교육과 장학사 우관문(290-2206)